

의안 번호	2237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b>검 토 보 고 서</b>
----------	------	--

## 1. 검토경과

- 제출일자 : 2024. 2. 29.(목)
- 제출자 :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위원회 회부일자 : 2024. 2. 29.(목)
- 위원회 심사일자 : 2024. 3. 15.(금)

## 2. 제안이유

-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회의개최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을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가 수행토록 조정(안 제5조)
- 타 법률 및 조례 개정에 따른 규정 현행화(안 제2조, 제2조의2, 제6조, 제11조, 제13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안 제1조, 제4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4조)

## 4. 근거법규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구정에 대한 자문, 심의, 조정 등을 위해 설치한 위원회 중 회의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위원회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와 통합하여 유연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례의 용어와 조문을 정비하여 조문을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임.
  
- 제반 규정을 검토한바,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됨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 됨.

# 근거법규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지방도시재생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3.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지방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12. 16.>

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25명 이상 30명 이내
2.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20명 이상 25명 이내
3. 제2호에 따른 대도시를 제외한 시·군 또는 구: 15명 이상 25명 이내

②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지방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원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문화, 인문·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지방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제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
- ⑤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9. 1., 2022. 12. 6.>
- ⑥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지방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⑦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⑧ 지방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⑨ 지방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⑩ 지방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